

일반공급 (1/2)

청약관련 사항은 관련법령의 개정, 인허가 과정,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,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,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.

청약자격 미숙지,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구분	내용																						
대상자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,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(자녀양육, 형제자매부양) •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																						
청약 통장 자격 요건	•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 - 1순위 ① 청약예금 :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(전용면적 85㎡ 이하) :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: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- 2순위 :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·청약부금·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[청약예금의 예치금액] <table><tr><th>구 분</th><th>천안 아이파크 시티 2단지</th><th>천안시, 충청남도 및 세종시</th><th>대전광역시</th></tr><tr><td>전용면적 85㎡ 이하</td><td rowspan="2">84㎡A · 84㎡B</td><td>200만원</td><td>250만원</td></tr><tr><td>전용면적 102㎡ 이하</td><td>300만원</td><td>400만원</td></tr><tr><td>전용면적 135㎡ 이하</td><td>102㎡ · 118㎡</td><td>400만원</td><td>700만원</td></tr><tr><td>모든 면적</td><td>전 타입</td><td>500만원</td><td>1,000만원</td></tr></table> ※ ‘지역’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※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				구 분	천안 아이파크 시티 2단지	천안시, 충청남도 및 세종시	대전광역시	전용면적 85㎡ 이하	84㎡A · 84㎡B	200만원	250만원	전용면적 102㎡ 이하	300만원	400만원	전용면적 135㎡ 이하	102㎡ · 118㎡	400만원	700만원	모든 면적	전 타입	500만원	1,000만원
구 분	천안 아이파크 시티 2단지	천안시, 충청남도 및 세종시	대전광역시																				
전용면적 85㎡ 이하	84㎡A · 84㎡B	200만원	250만원																				
전용면적 102㎡ 이하		300만원	400만원																				
전용면적 135㎡ 이하	102㎡ · 118㎡	400만원	700만원																				
모든 면적	전 타입	500만원	1,000만원																				
당첨자 선정 방법	• 당첨자 선정 순서 - 1순위 가점제 : ① 지역 → ② 가점 →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→ ④ 추첨 - 1순위 추첨제 : ① 지역 → ② 추첨 - 2순위 : ① 지역 → ② 추첨 • ① 지역 :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(천안시 거주자) → 모집공고일 현재 기타지역(충청남도,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) • ② 가점 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별표1(가점제 적용기준)에 의거한 청약 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. -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 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,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. •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: 가입기간은 순위 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- 입주자저축의 종류, 금액,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* 단,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• ④ 추첨 -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/추첨제 적용비율 <table><tr><th>구 분</th><th>천안 아이파크 시티 2단지</th><th>가점제</th><th>추첨제</th></tr><tr><td>전용면적 60㎡ 초과 85㎡ 이하</td><td>84㎡A · 84㎡B</td><td>40%</td><td>60%</td></tr><tr><td>전용면적 85㎡ 초과</td><td>102㎡ · 118㎡</td><td>-</td><td>100%</td></tr></table>				구 분	천안 아이파크 시티 2단지	가점제	추첨제	전용면적 60㎡ 초과 85㎡ 이하	84㎡A · 84㎡B	40%	60%	전용면적 85㎡ 초과	102㎡ · 118㎡	-	100%							
구 분	천안 아이파크 시티 2단지	가점제	추첨제																				
전용면적 60㎡ 초과 85㎡ 이하	84㎡A · 84㎡B	40%	60%																				
전용면적 85㎡ 초과	102㎡ · 118㎡	-	100%																				
비고	•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-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,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. -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,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.																						

일반공급 (2/2)

■ 청약가점제란?

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, 부양가족수 및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. [무주택기간(32점), 부양가족수(35점), 청약통장 가입기간(17점)]

■ 청약가점제 유의사항

구분	내용	이건만은 꼭!
무주택 기간 [총점 32점]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대상자 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. ※ 2018.12.11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. 가. 주택공급신청자 나.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.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 :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. (예) 부모, 장인·장모, 시부·시모, 조부·조모, 외조부·외조모 등 라.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) :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. (예) 아들·딸, 사위·며느리, 손자·손녀, 외손자·외손녀 등 마.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) :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. (예) 전혼자녀 등 - “무주택세대구성원”이란,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• 무주택기간 산정 대상자 : 주택공급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 •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 - 청약 신청 연령 기준 만 30세 이후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을 “만 나이” 기준으로 선정하되,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. 단, 청약통장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이후 무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- 만 30세 미만으로 미혼인 무주택자의 가점 점수는 “0”점입니다.	▶ Tip 무주택기간산정은 “만” 나이로 계산 해야 됩니다. ▶ 실수 사례 예)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5년 06월 20일(금) 기준 1995년 06월 20일생의 경우 • 입력 내용 한국 나이로는31세로 무주택기간을 “1년 이상(4점)”으로 입력(X) • 실제 점수 실제 나이는 만 30세 무주택기간을 “1년 미만(2점)”으로 입력(O)
부양 가족 수 [총점 35점]	• 직계존속의 부양가족 인정기준 -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세대주(분리된 배우자가 직계존속 부양 시 그 배우자도 세대주 이어야함)로서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. ※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 안됩니다. • 미혼자녀의 부양가족 인정기준 (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) - 주택공급신청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. • 부양가족 산정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	▶ Tip 부양가족 산정 시 “청약자 본인은 제외”입니다. ▶ 실수 사례 예) A씨의 사례 • 입력 내용 A씨는 단독세대주인데 본인을 부양가족수로 계산하여 “1명”(10점)으로 입력(X) • 실제 점수 청약자 본인은 부양가족수는 제외 “0명”(5점)으로 입력(O) ▶ 유의사항 - 부양가족수는 본인은 제외한 “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세대원”을 기준으로 하며,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- 2018.12.11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 의거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합니다.
청약통장 가입기간 [총점 17점]	•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, 청약통장 전환, 예치금액변경 및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(순위 기산일)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. • 실제 인터넷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 가점기간 및 해당 점수를 자동 산정하여 부여합니다.	